

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 · 관리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4년 12월 7일

○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8일

3. 제안이유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 · 관리 (안 제3조)
 -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· 관리
 -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운용 · 관리

- 재난관리기금의 용도(안 제4조)
 - 재난의 사전대비,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
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, 시행규칙 제20조에
규정된 사항
 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, 재난관련
장비 구입 등

-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등(안 제5조)
 -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실비지원
 - 주택임차비용 용자 : 소요액의 70%, 용자한도액
3천만원 이하

- 종전의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와 충청북도
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는 폐지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안을 검토한 바

-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
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,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
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」의 제정
되어 「재난관리기금」으로 일원화됨에 따라
소방방재청이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
통보(2004.9.18)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
사료됨